

Rio환경회의와 환경기술이용의 활성화

저자: 정상조

발행년도: 1992

문헌: 법제연구

권호: 3호 (1992년)

출처: 한국법제연구원

[157]

차 례

I. 서 론

II. 환경기술의 개발·지원

1. 환경기술의 개념
2.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 관한법률안
3. 지적소유권법에 의한 환경기술의 보호

III. 환경기술이용의 활성화

1. 환경기술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전제조건
2. 환경기술정보에의 접근 확대
3. 환경기술이용강제의 필요성
4. 강제실시허여제도의 원용

IV. 결 론

I. 서 론

환경보호 또는 오염규제에 있어서 환경을 오염시킨 기업등이 그러한 오염의 희생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것이 오래전부터 시도되어 왔으나, 이러한 손해배상을 받는 데에는 입증책임의 어려움이 항상 문제되어 왔고 또한 대규모의 오염이더라도 오염희생자 개개인에 대한 손해배상금액이 작은 경우에는 오염희생자들이 자신의 손해를 배상받기 위한 소송제기 등의 분쟁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민법상의 불법행위에 관한 입증책임의 어려움이라거나 동질적인 다수의 오염희생자들에 의한 분쟁해결에 따르는 민사소송법상의 장벽이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제도 자체가 환경오염에 대한 사후적 구제에 불과하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

[158]

다. 보다 철저한 환경보호를 위해서는 기업 등으로 하여금 환경오염 자체를 사전에 방지하

고 지구상에 이미 나온 오염 자체를 제거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물론 손해배상제도가 있기 때문에 오염 방지에 소요되는 비용이 손해배상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기업들로서도 스스로 사전에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된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또한 보다 효율적인 방법으로서 오염으로 인한 손해에 상응하는 금액을 이른바 환경세 등의 세금으로 부과하거나 오염배출허용장(discharging allowance permit)주1) 을 교부하고, 각 기업으로서는 그러한 환경세를 내거나 오염배출허용장을 추가적으로 구입하거나, 또는 절세의 차원에서 스스로 효율적인 오염방지기술을 개발하거나 구입하는 등의 투자를 하도록 강요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다주2) .

손해배상제도 또는 환경세제도 등의 간접적 강요에도 불구하고, 오염방지를 위한 투자를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손해배상이나 환경세 등의 비용보다 더 많은 경우에는 기업들이 경영적 판단의 일환으로서 오염방지를 위한 투자를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계속적으로 오염을 배출하게 될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환경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기술이 선진국의 관련 기술수준에 비하여 낙후되어 있는 경우에는 환경보호를 하려고 하여도 관련기술을 도입하는데 지나치게 많은 비용을 치루어야 하거나 그러한 기술을 아예 구할 수 없을 수도 있어서 환경보호를 위한 기술의 낙후성이 환경보호에 있어서 절대적인 장벽으로 되고 있다.

또한 지난 6월 Rio에서 개최된 UN환경개발회의에서 선진국들은 "환경이 감당할 수 있고 안전한 개발(environmentally safe and sustainable development)"의 원칙을 강조하면서 개발도상국들에게 일정수준 이상의 환경보호를 강요한 바 있고, 선진국들은 개발도상국들의 환경보호 여부를 통상문제와 연결시키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국내외적 상황을 고려해 볼 때, 환경보호를 위한 과학기술의 개발 및 이용의 활성화가 절실히 필요하게 되었다. 본고는 1992년 6월 14일 RioUN환경개발회의에서 기술이전 및 협력에 관하여 이루어진 합의내용주3) 을 중심으로하여 이른바 환경기술의 개발 및 이용의 활성화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59]

II. 환경기술의 개발·지원

1. 환경기술의 개념

환경기술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Rio환경회의에서는 이미 발생한 오염의 제거나 쓰레기의 재생 또는 기타의 사후적 처리에 관한 기술 뿐만 아니라 오염이나 쓰레기의 발생을 줄이거나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기술 즉 환경보호의 차원에서 건전한 기술(Environmentally sound technologies)이라고 파악하였다주4) .

우리나라 환경처가 최근에 마련하여 금번 국회에 제출한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안"도 환경기술이란 "사업활동이나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대기오염·수질오염·폐기물·토양오염·해양오염·소음·진동·악취 등에 대한 원인규명 및 그 방지와 제거를 위하여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주5) .

2.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안

앞에 언급한 바와 같이 환경보호에 대한 국내외적 요구와 상대적으로 낙후되어있는 우리나라

라의 환경기술수준을 고려하여, 우리나라 환경치는 때늦은 감은 있지만 환경기술수준의 향상과 환경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안"(이하에서는 환경기술법률안이라고 약칭함)을 마련하여 금번 국회에 제출하였다. 환경기술법률안에 의하면, 정부는 환경기술개발10개년계획을 수립하여 환경기술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정부의 출연금으로 환경기술의 연구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더 나아가 환경기술개발성과를 상품화 또는 기업화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에 대하여 금융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주6) .

환경기술 개발 및 환경산업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서, 환경기술법률안은 오염물질방지 기자재를 수입한 자 또는 정부출연금에 의하여 개발된 환경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이른바 환경기술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주7) . 또한, 환경기술 개발 지원을 위한 기구로서는 환경처장관 소속하에 환경기술조정위원회를 두어 환경기술개발계획의 수립과 연도별 연구과제의 선정 및 연구수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도록 하고, 환경기술의 개발 및 환경

[160]

정책의 수립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이른바 환경기술개발원을 설립하도록 하였고, 나아가 영세업체에 대하여 환경기술을 지원하고 개발된 환경기술의 보급 및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이른바 환경기술지원단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주8) .

마지막으로 특기할 사항은 사업자의 저오염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소비자의 환경보호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저오염제품의 품질을 인증하는 이른바 환경표지 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 되었다는 점이다.

3. 지적소유권법에 의한 환경기술의 보호

가. 특허법 등에 의한 환경기술관련 발명의 촉진

환경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재정적 및 행정적 지원도 중요하지만, 각종 지적소유권법도 환경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또 다른 하나의 중요한 법제도임을 간과하여서는 아니된다. 특히 특허제도는 특허대상인 "발명"에 대해서 일정한 요건하에 특허권이라고 하는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여 발명자를 보호하는 제도로서 환경기술을 개발한 자가 자신의 환경기술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법제도의 하나이다.

특허권이라고 하는 배타적 권리가 효율적인 경제적인센티브(economic incentives)가 되어서 환경기술에 관심이 있는 잠재적 발명자들은 환경기술의 연구 개발에 과감히 많은 노력과 자본을 투입하게 될 것이다. 특허받을 권리를 가진 자는 특허권에 의해서 보호받는 대가로써 자신의 특허발명이 특허공보를 통하여 일반국민에 널리 알려지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 일반국민은 특허발명에 관한 정보를 통해서 새로운 기술을 이용할 수 있게 되고 나아가 기존의 특허발명보다 더 개량된 기술을 개발하도록 창조적 투자와 노력을 기울일 수 있게 될 것이다.

따라서 특허제도는 환경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한 노력과 자본의 투자를 유도하는 경제적인센티브가 될 뿐만 아니라 환경기술정보를 일반공중에게 조기에 공개함으로써 환경기술의 보급 전파에 상당히 효율적인 법적환경을 마련해줄 수 있는 것이다주9) . 또한 중소기업 등에 의한 조그만 발명에 관하여는 실용신안제도가 활용될 수 있고, 특허제도와 밀접히 관련된 제도로서 1991년말에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영업비밀보호제도일 것이다. 종전까지

의 불명확한 상황을 벗어나서 이제는 환경기술의 개발 및 응용에 관한 영업비밀도 그의 보호가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하여

[161]

보다 명확하게 되었다.

나. 환경기술관련 발명에 관한 우선심사

환경기술관련 발명에 관한 특허출원을 하여도 즉시 특허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것은 아니고 특허출원이 있는 후 특허청에 의한 심사절차를 거쳐야 하고 심사가 지연되면 최종적으로 특허등록을 하기까지는 5년 이상 걸릴 수도 있다. 우리나라 특허법은 심사의 지연을 방지하고 중복연구 또는 중복투자로 인한 폐해를 줄이기 위해서 모은 출원발명을 심사하지 않고 일정기간내에 심사청구된 출원만을 심사하도록 하고 있다. 심사청구가 있으면 특허청은 심사청구된 순서에 따라서 출원발명에 대한 심사에 착수하게 된다.

그러나 특허청장은 긴급처리를 요한다고 인정되는 특허출원발명이 있으면 그러한 출원발명을 다른 출원발명에 우선하여 심사할 수 있는 이른바 우선심사제도가 있는바, 여기에서 긴급처리를 요한다고 인정되는 발명 가운데는 방위산업분야의 출원발명과 함께 "공해방지에 유용한 출원발명"도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환경기술관련 발명을 한 자는 특허출원을 한 후 곧이어 환경처장관의 우선심사추천을 받아서 특허청장에게 우선심사의 신청을 함으로써 되도록 신속히 특허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이다(주10) .

Ⅲ. 환경기술 이용의 활성화

1. 환경기술 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전제조건

앞에서 환경기술의 개발을 지원하는 법제에 관하여 살펴보았고, 특히 환경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법제도의 하나로서 특허법 등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런데 특허권 등에 의하여 보호되는 환경기술을 이용하고자 하더라도 어떠한 특허발명이 있는지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환경기술의 이용이 이루어질 수 없거나 그 이용율이 저조할 것이다.

여기에서 환경기술에 관한 정보를 일반공중에게 널리 보급하고 전파할 필요가 있다. 또한 환경기술에 관한 정보가 일반공중에게 널리 접근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환경기술에 관련된 특허권 등의 지적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자신의 지적소유권을 근거로 하여 다른 사람이 특허등록된 환경기술을 이용하고자 하는 것을 전혀 허락

[162]

하지 않는다면, 특허권 등의 지적소유권이 환경기술의 이용에 중대한 장벽이 될 뿐이고 특허등록된 환경기술발명이 사회전체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못하는 결과가 된다(주11) . 따라서 특허권자 등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특허권 등의 보호대상인 환경기술의 이용을 강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환경기술의 이용활성화라고 함은 구체적으로 환경기술의 양도와 이용허락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러한 환경기술의 양도와 이용허락이 국내적으로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포함함은 물론이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

이 환경기술의 수준이 비교적 낙후되어 있는 나라에서는 선진국의 환경기술을 도입할 절실한 필요가 있는데, 외국의 환경기술을 도입함에 있어서는 몇가지 절차와 요건에 따라야 한다. 예컨대, 외국의 환경기술의 도입으로 인하여 외국당사자가 우리나라 회사의 주식이나 지분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에는 외자도입법에 따른 인가신청 또는 신고를 해야 하고, 환경기술도입에 관한 국제계약이 독점규제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하여 검토되고 위반되는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그에 관한 시정권고 또는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주12) .

환경기술의 이용활성화와 관련하여 특히 주목할 사항은 외국 환경기술의 도입을 포함한 외국인투자가 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이나 수출자유지역에 입주하는 사업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각종 조세의 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일 것이다. 특히 국민경제에 긴요하고 국내에서 독자적 개발이 곤란한 고도기술의 경우에는 그러한 기술도입대가에 대하여 조세가 면제된다. 이러한 고도기술에는 환경기술이 포함되어 있는데, 면세대상인 환경기술로서 열거된 것은 (i) 대기오염물질 저감기술, (ii) 수질오염물질처리기술, (iii) 폐기물처리기술, (iv) 석유 분해, 탈황 및 개질시설, 그리고 (v) 유효기유 및 윤활유정제로 되어 있다(주13) .

2. 환경기술정보에의 접근 확대

가. 환경기술정보의 중요성

환경기술의 이용을 활성화한다는 차원에서 환경기술관련 정보를 널리 일반공중에게 전파 보급한다는 것은 환경기술 자체에 관한 정보뿐만 아니라 특정 기술이나 제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정보 그리고 환경기술을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는 특허권 등의 지적소유권에 관한 정보와 그러한 특허권 등에 의하여 보호되는 환

[163]

경기술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노우하우 등에 관한 정보 그리고 더 나아가 환경기술에 관한 전문가 또는 기술자 등에 관한 정보까지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정보를 포함하여 말한다. 이와 같이 넓은 의미의 환경기술정보가 일반공중에게 신속히 보급되는 경우에 비로소 환경기술이용은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환경기술이용의 활성화에 있어서 환경기술정보의 중요성을 인정하여 Rio환경회의에서도 개발도상국이 환경기술과 관련 노우하우에 관한 정보를 용이하고 신속하게 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을 모색하여야 한다고 합의되었다. 또한 개발도상국의 환경기술의 수준은 낙후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개발도상국이 취득해야 할 기술정보 가운데는 특허권 취득대상이 아닌 선진국에서의 선행의 공지 및 공용기술도 포함될 것이다. 개발도상국은 이러한 선행기술에 관한 정보뿐만 아니라 그러한 기술의 효율적 이용에 필요한 노우하우에 관한 정보도 취득하여야 할 것이다(주14) .

나. 환경기술정보망의 필요성

개발도상국이 기술정보에 보다 용이하고 저렴한 방법으로 접근하도록 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Rio환경회의는 그러한 기술정보의 국내적·지역적 또는 국제적 정보망을 구축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기존의 기술정보망이 국제적으로 연결되어야 하고, 이러한 과정에 있어서 각국의 농업·공업·자원·에너지 등에 관한 정보센터나 관련 물자집배센터 등을 국제적인 규모로 연결하고 나아가서 각국 특허청의 환경기술관련 특허발명에 관한 정보를 국제적인

규모로 연결하여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구성된 환경기술정보망 또는 환경기술정보유통센터는 최종 정보소비자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운영되도록 한다. 물론 이러한 환경기술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있어서는 관련기업들, 각종업계조합들, 각종 민간기구, 각국 정부, 기타의 관련 단체들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주15) .

이러한 환경기술정보센터는 환경보호기술이 개발된 구체적 사례와 그러한 환경기술이 적용 및 실시된 구체적 사례를 널리 전파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보다 효율적인 환경기술전파를 위하여 환경기술정보센터는 환경보호기술정보 자체의 제공뿐만 아니라 기타의 밀접히 관련된 서비스도 제공하여야 할 것인 바, 예컨대, 관련된 기술정보에 관한 전문적 자문이나 관련된 기술에 관한 교육과 훈련 그리고 적절한 기

[164]

술평가 등을 구할 수 있는 기관이나 전문가에 관한 정보까지도 제공해 주어야 할 것이다(주16) . 이러한 정보제공의 종합적 서비스의 도움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환경기술의 이전 및 전파에 필요한 다양한 종류의 합작투자 또는 기업협동이 훨씬 더 용이해질 것이다(주17) .

국제적인 규모의 환경기술정보망을 형성하기 위하여 기존의 국내·지역 또는 국제적인 기술정보센터나 정보망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연결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국제적인 정보망의 형성은 관련된 UN기구의 주도 아래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서는 기존의 정보망 또는 정보센터를 확대하거나 신설하는 작업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주18) .

3. 환경기술이용 강제성의 필요성

일반 공유의 환경기술이 아니고 특정 개인의 소유에 속하는 환경기술의 이전 및 이용의 활성화를 추구하는데 있어서 어려운 점은 그러한 개인의 특허권 등의 지적소유권을 보호하면서 동시에 환경기술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되도록 합리적인 조건으로 필요한 환경기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는 점일 것이다. 이와같은 환경기술이용 활성화를 위하여는 따라서 그러한 개인 소유의 환경기술의 실시허여계약 등 이용허락계약을 체결하는데 장애가 되는 요인이 무엇인가 하는 객관적인 검토를 하고, 나아가서 그러한 장애요인을 제거하거나 줄이기 위한 적절한 제도를 마련하도록 하며 동시에 개인 소유의 환경기술의 이전 및 이용을 유도할 수 있는 재정적 또는 기타의 지원 또는 장려를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주19) .

환경기술의 이용 활성화와 관련하여 Rio환경회의에서 특기해야 할 사항의 하나로는 환경기술과 관련된 지적소유권의 남용을 규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도록 제안하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서 제안된 지적소유권 남용 규제를 위한 제도로서는 적절하고 형평에 맞는 보상을 하고 지적소유권 보호대상 기술을 이용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이른바 강제실시허여제도이다. Rio환경회의는 더 나아가서 선진국 등과 같이 지적소유권관련상품과 서비스를 수출하고 있는 나라들의 입장에서는 자국의 환경기술이 개발도상국에 이전되거나 이용되도록 유도할 수 있는 재정적인 또는 기타의

[165]

지원과 장려를 하도록 제안하고 있다(주20) .

Rio환경회의는 동시에 "일반 공유에 속하는 환경기술(environmentally sound technologies in the public domain)"의 이전의 활성화를 모색하여야 한다는 제안을 하고 있다(주21) . 그런데, 일반 공유의 환경기술은 말 그대로 일반 공유이기 때문에 특허권 등의 지적소유권의 보호대상이 아니고 따라서 Rio환경회의에서의 합의가 없더라도 당연히 그러한 기술을 필요로 하는 최종소비자에 의하여 자유로이 이용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한도에서는 Rio환경회의는 당연한 사실을 제안하고 있고 아무런 실속있는 내용이나 발전이 없는 회의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Rio환경회의의 결실이라고 한다면 지적소유권에 의한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고 자유로이 이용될 수 있는 환경기술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환경기술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하고 그의 이용에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일반 공유의 환경기술도 아무런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환경기술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방법과 제도를 제안하고 있다는데 있다고 하겠다. 그런데, 여기에서 흥미로운 사실은 Rio환경회의에서 제안된 환경기술의 이용활성화방안의 밑바닥에 깔려 있는 기본 원칙의 하나는 특허권 등의 지적소유권을 최대한으로 보호하면서 환경기술의 이용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점이고 이러한 견지에서 특허권의 배타적 권리로서의 본질을 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다(주22) .

4. 강제실시허여제도의 원용

가. 우리나라의 강제실시허여제도

환경기술에 관한 이용강제로서 중요한 제도는 상표법이나 기타의 지적소유권법보다도 특허법에 따른 강제실시허여제도이므로 그에 관하여만 살펴본다. 우리나라 특허법에 의하면 특허발명이 정당한 이유없이 계속하여 3년이상 국내에서 실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허발명을 실시(이용)하고자 하는 자가 그 특허발명의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의 허락에 관하여 협의를 청구할 수 있다. 즉, 우리나라에 특허등록을 하여 배타적 권리만을 가진채 특허발명의 실시를 하지아니하는 경우에는 특허권부여의 사회적 목적이 전혀 실현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특허등록된 발명기술의 사회적 활용이 억제되어서 사회전체적으로 해로운 영향만을 미치게 된다.

[166]

이러한 이유에서 우리나라 특허법에 의하면 그러한 경우에 특허발명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통상실시권의 허락에 관한 협의를 청구한 후에 그러한 협이가 성립하지 아니하면 특허청장에게 통상실시권의 설정에 관한 재정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특허청장은 일정한 대가 즉 실시료(royalties)를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일정한 범위의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재정을 할 수 있다. 이러한 특허법 규정에 따라서 환경기술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기술 특허발명에 관한 통상실시권을 허락받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 특허법은 일반적으로 특허발명이 3년 이상 국내에서 실시되지 아니한 경우에 통상실시권의 재정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동시에 특허발명의 실시가 공익의 견지에서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동일한 절차에 따라서 통상실시권 허락의 재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공익의 구체적 내용과 범위가 무엇인지 불분명하지만, 환경기술 가운데 환경보호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환경기술은 공익의 견지에서 통상실시권의 허락을 위한

재정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이와 같이 3년 이상 정당한 이유없이 실시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공익의 견지에서 필요한 경우에 특허청장의 재정에 의하여 허락된 통상실시권은 특허권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강제실시허여의 하나라고 본다.

다만, 우리나라에서 위와 같은 강제실시허여제도가 실제로 원용된 사례는 별로 없는 것 같다. 강제실시권제도가 잘 이용되지 아니하는 원인으로서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우리나라 기업들이 특허발명정보에 대한 관심이 적고, 기업 자체내에서 개발된 기술과 스스로 획득한 특허를 기초로 해서 외국기업과의 교차실시를 하도록 하면 실시료도 경감할 수 있지만 그러한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다는 점이 주요한 원인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특허청으로서도 특허발명정보의 확산이라는 차원에서 3년 이상 실시되지 아니하는 특허발명에 관한 조사 및 공개를 한다면 특허권의 소극적 남용은 사전에 규제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나. 영미의 강제실시허여제도

영국 특허법도 이러한 특허발명실시의 거절의 규제에 의한 발명기술의 이용 활성화 및 경쟁제한의 방지를 도모하기 위한 법적 장치로서 우리나라와 유사한 강제실시허여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즉, 특허가 부여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는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지면 특허발명의 강제실시허여가 가능해진다.

강제실시허여가 가능한 구체적인 경우를 보면, 특허발명이 영국내에서 상업적으로 실시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허가 부여된지 3년동안 상당한 정도로 실시되고 있지 못한 경우와 특허발명에 의해서 특정 제품이 만들어질 수 있음에도 영국내의

[167]

당해 제품에 관한 수요를 상당한 정도로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상당부분의 그러한 수요가 수입에 의해서 해결되는 경우에는 특허청장(the Comptroller-General of Patents)은 강제실시허여를 명할 수 있다. 강제실시허여를 명하는 경우에 영국 특허청장은 강제실시허여가 영국내의 관련 산업의 육성과 영국내에서의 특허발명 실시의 장려를 위해서 필요한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주23) .

이에 반하여 미국에서는 특허발명에 관한 강제실시허여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는 대신 특허권 남용에 해당하는 행위를 독점규제법에 의하여 규제해 왔고, 특기할 점은 최근에 특허권남용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기 위하여 특허법이 1988년에 개정되었다는 점이다. 즉, 이제까지 판례에 의해서만 인정되어온 특허권 남용 이론을 포괄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성문법화하기 위하여 미국연방의회는 1988년에 특허법을 개정하였다.

1988년 개정 특허법은 특허발명실시거절과 기위팔기(Tying Agreements)의 강제에 대하여 특허남용규제를 할 수 있는 명시적인 조항을 두었다(주24) . 따라서, 특허발명의 실시하여 거절만을 이유로 해서 특허권남용이론을 적용할 수는 없지만 실시하여 거절이 있는 상황에서 특허권침해의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법원이 특허침해금지명령 대신에 단순한 손해배상만을 인용할 수 있는 재량은 가지고 있는 것이다(주25) . 영미에서 인정되는 강제실시허여제도 또는 특허권 남용규제제도 등이 물론 환경기술관련 발명의 이용활성화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

다. 강제실시허여제도에 대한 대안

영국과 미국 등의 선진국은 근본적으로 강제 실시하여 등에 의하여 특허권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어서, 환경기술에 관하여서도 개발도상국들에게 환경기술을 이전하고 이용활성화를 도모하면서도 선진국의 특허권자들의 권리를 최대한으로 존중하고자 하는 노력을 보여 주었다. 그리하여, Rio환경회의는 선진국들로 하여금 자국의 환경기술이 개발도상국에 이전 또는 이용되도록 유도하기 위한 재정적 또는 기타의 지원과 장려를 하도록 제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선진국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차원에서 선진국들로 하여금 후진국에의 환경기술의 이전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자국의 환경기술을 통상의 상업적

[168]

조건으로 구입하거나 사용허락을 받아서 개발도상국에 이전하도록 제안하고 있다(주26) . 여기에서 선진국들로 하여금 자국의 환경기술을 통상의 시가에 따라서 구입하도록 하는 것이 선진국에서의 환경기술에 관한 지적소유권법적 보호를 확보하기 위한 것임은 물론이다. 선진국들로서는 개발도상국과의 경제개발협력의 차원에서 자국에서 상업적으로 취득한 환경기술을 개발도상국들에게 비영리적 또는 비상업적 조건으로(on non-commercial terms) 이전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비상업적 조건으로 환경기술을 이전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조건의 기술이전을 의미하는지 불분명하지만, 환경기술을 개발도상국들에게 무상으로 또는 아주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거나 이용을 허락하는 것을 의미할 것이라고 추측된다. 선진국들에 의한 자국의 환경기술의 구입 및 개발도상국에의 이전과 병행하여 또는 그에 대한 대안으로는 개발도상국들에게 일정한 자금을 지원하여 개발도상국들로 하여금 환경기술을 도입하도록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환경기술의 도입에 소요되는 막대한 자금의 부담이 환경기술의 이용에 관한 절대적인 장애요인이 되는 것을 피한다는 것이다(주27) .

또한 동시에 Rio환경회의에서는 환경기술의 개발과 이전 또는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그리고 그들의 관련 업계와 연구기관, 그리고 정부 사이에 장기적인 협력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한다고 합의되었다. 특히 UN 등의 국제기구는 각국 정부와 공동으로 협력하여 위에 언급된 여러가지 활동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고, 그 가운데에는 특정기술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할 수 있도록 각국 정부 및 기업들에게 각종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환경관련기술의 개발·이전·이용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국제기구 등의 적극적인 활동이 요구되고 그러한 국제적 차원의 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자금은 대략 연간 미화 4억5천달러 내지 6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자금은 특히 선진국에 의하여 소유되고 있는 환경기술의 개발도상국에의 무상이전이나 그와 유사한 기술 지원에 대부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주28) .

IV. 결 론

이상에서 환경기술의 개발 및 지원 그리고 그 이용의 활성화에 관한 Rio환경회의

[169]

내용과 우리나라의 관련 법률안 등을 살펴 보았다. Rio환경회의에서는 환경기술의 이전을 위한 선진국의 여러가지 노력에 합의한 바 있지만, 선진국의 기본입장이 환경기술에 관한 특허권 등의 지적소유권은 최대한 보호하면서 환경기술의 이전을 활성화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구체적 실현에 상당한 국제기금을 필요로 하고 그러한 자금의 조달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의문점이 남게 된다. 한가지 분명한 것은 Rio환경회의를 통해서 환경기술의 중요성과 그에 관한 정보보급 및 접근의 중요성에 대하여 주의를 환기시키고 국제적 협력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일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국회에 제출된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안을 통하여 지금부터라도 환경기술의 개발 및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한다면 환경보호와 환경산업의 육성에 많은 기대를 걸어볼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환경기술법률안의 구체적 내용을 보면, 환경기술정보센터는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Rio환경회의에서 지적된 바와 같은 환경정보기술의 중요성에 비추어 환경기술법률안의 내용이 미흡하고 불충분하여 실제로 환경기술정보센터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우선 환경기술정보센터가 환경기술개발원 내부에 설치되어 있어서 전국적인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국제적인 정보망과 연결되어 환경기술 그 자체 뿐만 아니라 관련된 기술인력과 특허발명 등에 관한 정보까지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을지 자신할 수는 없는 것이다. 또한 환경표지제도에 있어서도 거래실정에 부합하도록 간소하고 미적이면서도 통일된 표식모형을 개발하고 허위표지 등에 관한 철저한 규제 등의 법집행 의지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주1)

예컨데, 42 USC Secs.7473-7475.

주2)

Richard A.Posner, Economic Analysis of Law(Boston, Little, Brown and Co., 1977), pp.279,280

주3)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Development at Rio de Janeiro, Agenda 21, Chapter 34, "Transfer of Environmentally Sound Technology, Cooperation and Capacity-Building"이하에서는 "Rio환경회의 Agenda 21"이라고 약칭한다.

주4)

Rio환경회의의 Agenda 21, Para.34.3.

주5)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안, 제2조.

주6)

환경기술법률안, 제6조, 제8조, 제28조.

주7)

환경기술법률안, 제30조.

주8)

환경기술법률안, 제11조, 제19조, 제26조.

주9)

William R.Cornish, Intellectual Property: Patents, Copyright, Trademarks and Allied Rights(London, Sweet &Maxwell, 1990), p.17, 79.

주10)

[특허법 제59조 \(1\); 특허법시행령 제9조 및 제10조; 특허법시행규칙 제38조.](#)

주11)

Rio환경회의 Agenda 21, Para.34.11.

주12)

[의자도입법 제2조 4호;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32조.](#)

주13)

[의자도입법시행령 제24조의2;](#) 기술도입에관한규정(재무부고시 제91-21호).

주14)

Rio환경회의 Agenda 21, Paras.34.9, 34.14.

주15)

Rio환경회의 Agenda 21, Para.34.15.

주16)

미연방오염방지법(42 USC Sec.13105)도 유사한 정보센터설치를 규정하고 있다.

주17)

Rio환경회의 Agenda 21, Para.34.16.

주18)

Rio환경회의 Agenda 21, Para.34.17.

주19)

Rio환경회의 Agenda 21, Para.34.18(d).

주20)

Rio환경회의 Agenda 21, Para.34.18(e).

주21)

Rio환경회의 Agenda 21, Para.34.18(a).

주22)

Rio환경회의 Agenda 21, Para.34.18(e).

주23)

영국 1977년 특허법 제48조, 제50조: Richard Whish, Competition Law(London, Butterworths, 1989), at 672.

주24)

35 USC Sec.271(d)(4).

주25)

Jay Dratler, Jr., Intellectual Property Law: Commercial, Creative, and Industrial Property (New York, Law Journal Seminars-Press, 1991) at 2-152.

주26)

Rio환경회의 Agenda 21, Para.34.18 (e)(iii).

주27)

Rio환경회의 Agenda 21, Para.34.18 (e) (v).

주28)

Rio환경회의 Agenda 21, Para.34.29.